

중대재해사태 _ 산재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입니다!



적재물 점검 중인 지게차 운전자가 무너지는 주물사 포대에 깔림



재해 개요



창고 내에서 지게차로 화물 운반 작업 중 화물 좌측 모서리가 적재된 주물사 포대(1단)에 부딪혀서 지게차 하차 후 포대 손상 부위를 확인하던 중 2단 적재된 주물사 포대가 무너져 작업자 깔림

재해발생 원인



- > 지게차 화물 적재 시 운전자의 전방 시야를 가려서 적재
- > 화물 다단 적재 시 하적단의 유출 및 붕괴 등 위험 방지 조치 미흡
- > 지게차 작업계획서 미작성

재해예방 대책



◦ 지게차 운반 작업 시 전방시야 확보

- > 운전자의 전방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의 높이를 조절하여 적재
- > 유도자를 배치하여 신호

◦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

◦ 다단 적재 시 위험방지 조치 실시

관련 법령

산안법,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KOSHA Guide 등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(화물적재 시의 조치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1조(하적단의 간격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2조(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)
- 고용노동부 고시(제2015-47)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
- KOSHA Guide(M-185-2015)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
- KOSHA Guide(G-100-2013) 지게차의 운전자의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기술지침



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!

안전보건 VR 전용관
360vr.kosha.or.kr



지게차 작업 이것만은 확인!



보행자용 출입구 별개 설치



경보장치 설치



동선확보, 유도자 배치

지게차 준수사항 (산업안전보건법)



1

관리감독자에 의한 관리

- 법 제14조(관리감독자) -
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(지게차, 화물차, 구내운반차 등)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시 관리감독자가 특별안전·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2

지게차 작업 및 해당 자격·면허

- 법 제47조(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) -

-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및 면허를 가진 자가 지게차를 조정할 수 있으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.
*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3

안전·보건교육

- 영 제10조(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) 및
법 제31조제3항(안전·보건교육) -

- 지게차 작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정기교육, 관리감독자 교육, 채용 시 교육,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외에 특별안전·보건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.
 - 특별안전·보건교육 공통사항
 -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
 -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
 -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
 - 작업신호 및 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
 -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

4

위험기계·기구 방호조치

- 지게차 대여자의 조치사항
[시행규칙 제49조(기계등 대여자의 조치)]
 - 해당 기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필요한 정비 실시
 - 해당 기계 등 능력 및 방호조치 내역을 대여자에게 교부
 - 해당 기계 등의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대여 받는 자에게 교부
 - 해당 기계 등의 수리·보수 및 점검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을 대여 받는 자에게 교부
- 지게차 대여 받는 자의 조치사항
[시행규칙 제50조(기계등을 대여 받는 자의 조치)]
 - 해당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
 - 작업내용, 지휘계통, 연락·신호 등의 방법, 운행경로·제한속도 및 기타 운행에 관한 사항,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작하는 사람에게 주지

